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	---------

**정기 제438호 2020. 5. 15(금)**

## 조례

장수군 조례 제 2420호  
장수군 조례 제 2421호  
장수군 조례 제 2422호  
장수군 조례 제 2423호  
장수군 조례 제 2424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1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장수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규칙

장수군 규칙 제 1159호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
--------------------------	----

##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20 - 632호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
장수군 공고 제 2020 - 658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0 - 6호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9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0 - 7호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6

## 고시

장수군 고시 제 2020 - 47호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 기본계획 수립 고시	52
장수군 고시 제 2020 - 5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54
장수군 고시 제 2020 - 52호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 시행계획 수립 고시	55
장수군 고시 제 2020 - 53호	장수군계획시설(도로/장수남송로(중로3-5호, 소로2-14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57

회 람							
--------	--	--	--	--	--	--	--

발행 장수군 (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

장수군 조례 제2420호

##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기금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종료(2017.12.31.)로 사회복지기금 내 장애인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 기금조성의 당위성이 약화되었고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장수군 조례 제2421호

##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0년 5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자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 불복청구인 · 대리인 지정일자 ·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대리인 의무 ·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 도입( 2020. 3. 2.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장수군 군세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 부터 적용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제7조)
-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절차 신설(제8조)
-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 · 우대 방안 신설(제9조)

장수군 조례 제2422호

## 장수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 마을에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드는 모든 경비를”을 “필요한 경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마을방범용 CCTV 고장발생시 수선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원근거 규정(제6조)

장수군 조례 제2423호

##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 내용)** ①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치매안심센터는 직영 운영이 원칙이므로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 대상자의 혜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 지원 내용 및 기준을 신설함(제5조의2)
- 나. 업무의 위탁 삭제(제8조)
- 다. 비용의 지원 삭제(제9조)

장수군 조례 제2424호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래 본인부담금)”을 “(외래진료 및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만65세이상,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자녀」의 외래진료비 지원에서 응급실진료비로 지원을 확대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 “외래본인부담금”을 “외래진료 및 응급실 본인부담금”으로 변경(제23조제2항)

장수군 규칙 제1159호

##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수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수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

른 장수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 장수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장수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장 수 군

### 장수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장수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장수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장수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장수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장수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장수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장수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 세정팀(☎063-350-2216)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장수군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장수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장수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 세정팀(☎063-350-2216)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관인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장수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 1. 개정이유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 · 지정통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규칙에 신설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서식(제11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서식(제12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지정 사건 명세 서식(제13조 신설)

장수군 공고 제2020-63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장수군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및 관련 대행 사업자의 안전과 신속한 폐기물 수거를 위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과 관련 안전 기준 등

**에 대한 조항 신설[제11조의1]****나. 개정내용**

- 1)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 할 경우 각 읍·면별 환경미화원 근무 형태를 조정(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근무형태 조정)[제11조의1 제1호]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를 통한 폐기물 수거시 차량형태 및 여건에 따른 근무형태 조정[제11조의1 제2호]

**3. 관계법령(붙임)**

- 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환경위생과장)
- 2) 팩 스 : 063-350-5718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전화 063-350-25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관한 세부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작업시간은 주간작업(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장수읍·장계면의 경우 유동인구 및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하여 06:00~16:00로 한다.(단, 토요일의 경우 06:00~11:00로 한다.)
  - 가. 각 읍·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수 4,200명 이상인 읍·면은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각 읍·면별 배정된 공무직 근로자 정수표에 따른 환경미화원 근무형태는(별표2의1)과 같다.
  - 나. 인구수 및 운행차량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환경미화원 근무형태는(별표2의2)와 같다.
  - 다. 군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거나 군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경우 작업시간은 06:00~16:00로 하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계약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별표2의3)과 같이 근무형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수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2의1], [별표2의2], [별표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1]

### 환경미화원 배정 기준에 따른 근무형태(제11조의1 제1항 관련)

환경미화원 배정인원	근무형태	비 고
7명	3인 1조	공무직 근로자 정수표 기준
6명	3인 1조	
4 ~ 5명	2인 1조	
3명	2인 1조	
2명	2인 1조	

[별표 2의2]

### 운행차량별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제11조의1 제1항 관련)

관련 업무	근무형태	비고
압착진개	2인1조 또는 3인1조	읍·면별 인구수에 따른 환경미화원 배정 기준 준용
진개덮프	2인1조 또는 3인1조	
재활용품 수거차량	2인1조 또는 3인1조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1인1조	운전자석에서 조작을 통해 업무 진행 가능
암롤트럭	1인1조	

[별표 2의3]

**운행차량별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제11조의1 제2항 관련)**

관련 업무	근무형태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1인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용 차량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신 설〉</b></p>	<p><b>제11조의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관한 세부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p> <p><b>1.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b> 작업시간은 주간작업(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장수읍·장계면의 경우 유동인구 및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하여 06:00~16:00로 한다.(단, 토요일의 경우 06:00~11:00로 한다.)</p> <p>가. 각 읍·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수 4,200명 이상인 읍·면은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각 읍·면별 배정된 공무직 근로자 정수표에 따른 환경미화원 근무형태는(별표2의1)과 같다.</p> <p>나. 인구수 및 운행차량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환경미화원 근무형태는(별표2의2)와 같다.</p> <p>다. 군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시급히 처리하여야하거나 군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b>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경우</b> 작업시간은 06:00~16:00로 하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계약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별표2의3)과 같이 근무형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수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신 설〉</b></p>	<p><b>[별표2의1]</b></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미화원 배정 기준에 따른 근무형태 (제11조의1 제1호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환경미화원 배정인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무형태</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인 1조</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공무직 근로자 정수표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인 1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 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인 1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인 1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인 1조</td> </tr> </tbody> </table>	환경미화원 배정인원	근무형태	비 고	7명	3인 1조	공무직 근로자 정수표 기준	6명	3인 1조	4 ~ 5명	2인 1조	3명	2인 1조	2명	2인 1조
환경미화원 배정인원	근무형태	비 고													
7명	3인 1조	공무직 근로자 정수표 기준													
6명	3인 1조														
4 ~ 5명	2인 1조														
3명	2인 1조														
2명	2인 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별표2의2]  <u>운행차량별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u>  <u>(제11조의1 제1호 관련)</u></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련 업무</th><th>근무형태</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압착진개</td><td>2인1조 또는 3인1조</td><td rowspan="4">읍·면별 인구수에 따른 환경미화원 배정 기준 준용</td></tr> <tr> <td>진개덤프</td><td>2인1조 또는 3인1조</td></tr> <tr> <td>재활용품 수거차량</td><td>2인1조 또는 3인1조</td></tr> <tr> <td>노면흡입식 청소차량</td><td>1인1조</td></tr> <tr> <td>암롤트럭</td><td>1인1조</td><td>운전자석에서 조직을 통해 업무 진행 가능</td></tr> </tbody> </table>		관련 업무	근무형태	비고	압착진개	2인1조 또는 3인1조	읍·면별 인구수에 따른 환경미화원 배정 기준 준용	진개덤프	2인1조 또는 3인1조	재활용품 수거차량	2인1조 또는 3인1조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1인1조	암롤트럭	1인1조	운전자석에서 조직을 통해 업무 진행 가능
관련 업무	근무형태	비고															
압착진개	2인1조 또는 3인1조	읍·면별 인구수에 따른 환경미화원 배정 기준 준용															
진개덤프	2인1조 또는 3인1조																
재활용품 수거차량	2인1조 또는 3인1조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1인1조																
암롤트럭	1인1조	운전자석에서 조직을 통해 업무 진행 가능															
〈신 설〉	<p>[별표2의3]  <u>운행차량별 업무특성에 따른 근무형태</u>  <u>(제11조의1 제2호 관련)</u></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련 업무</th><th>근무형태</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td><td>1인1조</td><td>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용 차량</td></tr> </tbody> </table>		관련 업무	근무형태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1인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용 차량									
관련 업무	근무형태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1인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용 차량															

### 〈폐기물관리법 개정 '19.4.16, 시행 '19.10.17〉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 '19.12.31〉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장수군 공고 제2020-658호

##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0.5.27.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5.27.시행) 이 개정사항 중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부 미 반영된 부분을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시정 안내 공문 : 행동강령과-1366(2020.4.9.)

###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 개정(안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항)

\* 외부강의등을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 개정\*(안 제2항)

\*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  
→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등의 제한 구체화\*(안 제5항)

\* 외부강의등을 →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 3. 관련법규

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4. 금후계획

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규칙안 입법예고 : 2020. 5월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6월  
다. 규칙 공포 및 시행 : 2020. 6월

###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 팩스 : 063-350-5702

###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전화 063-350-2057)  
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락)</p> <p>② 공무원은 <u>외부강의등을</u>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u>신고하는</u>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 락)</p> <p>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⑥ ~ ⑩ (생 락)</p>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관련법규****공무원 행동강령**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 ③ 삭제 <2020. 4. 7.>
-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시행일 : 2020. 5. 27.] 제15조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사유**

장수군 조직개편 이후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의 적용을 받는 세입 및 세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특별회계조례」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조)

나. 세입세출 일부항목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 3.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 2)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수도법」

제9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8,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장수군수(시설관리사업소장)
- 2) 팩 스 : 063-350-5725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전화 063-350-28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급수사용료
2. 보조금
3. 출연금
4. 남원시장, 장수·임실·곡성·순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유지관리비용
2. 상수도확장공사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 략)</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p>
<p><u>제2조(세입·세출)</u>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생 략)</p>	<p><u>제2조(세입)</u>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수도급수사용료</li> <li>2. 보조금</li> <li>3. 출연금</li> <li>4. 남원시장, 장수·임실·곡성·순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li> <li>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6. 기타 수입금 (현행과 같음)</li> </ol>
<p><u>〈신 설〉</u></p>	<p><u>제3조(세출)</u>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수도유지관리비용</li> <li>2. 상수도확장공사비용</li> <li>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li> <li>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li> </ol>
<p><u>제3조·제4조</u> (생 략)</p>	<p><u>제4조·제5조</u> (현행 제3조 및 제4조와 같음)</p>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사유**

- 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및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정비(안 제9조)
- 나. 「수도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안 제38조)

## 3. 관계법령 및 권고사항

### 1) 「수도법」

제38조 제4항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 65세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2)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항 「수도법」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각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도 도입

### 4)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정비사항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정비 「상수도 급수조례」제9조(공사의 시행) 일부 개정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서식 1]를 장수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8,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장수군수(시설관리사업소장)
- 2) 팩 스 : 063-350-5725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전화 063-350-28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12.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공사의 시행) ① (생 략)</b>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 ⑤ (생 략)</p> <p><b>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b>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9.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10.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b>제9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b>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b>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상수 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p> <p>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p> <p>12.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상수도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p> <p>13.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장수군 고시 제2020-47호

##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 기본계획 수립 고시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일

###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336 도비 33.6 군비]630.4]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호덕마을 일원

####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한뼘문화회관 조성, 작업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 한뼘초록길 조성, 더불어 한뼘마당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리더교육, 호덕 노인학교, 경영활성화컨설팅, 호덕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호덕 브랜드 개발 등

##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 차 별				비고
		계	2019	2020	2021	
합 계	1,000,000	1,000,000	26,348	884,652	89,000	
○ H/W 사업비	750,000	750,000	—	750,000	—	
– 기초생활기반확충	512,000	512,000	—	512,000	—	
· 마을회관 리모델링	430,000	430,000	—	430,000	—	
· 작업쉼터 조성	82,000	82,000	—	82,000	—	
– 지역경관개선	238,000	238,000	—	238,000	—	
· 한뼘초록길 조성	220,000	220,000	—	220,000	—	
· 더불어 한뼘마등 조성	18,000	18,000	—	18,000	—	
○ 지역역량강화	140,000	140,000	—	51,000	89,000	
○ 부대비용 등	110,000	110,000	26,348	83,652	—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9. 01. ~ 2021. 12. (3년)

9. 사업효과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20-50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확대 개발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계북면 농소리 산46
- 면 적 : 4,950m<sup>2</sup>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54,560,000원

4. 사업 예정 기간 : 2020. 5월 ~ 2020. 12. 31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박경원

장수군 고시 제2020-52호

##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 시행계획 수립 고시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일

###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호덕 마을만들기사업(종합)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336 도비 33.6 군비630.4] <외서자부담 : 13.398>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호덕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한뼘문화회관 조성, 작업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 한뼘초록길 조성, 더불어 한뼘마당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리더교육, 호덕 노인학교, 경영활성화컨설팅, 호덕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호덕 브랜드 개발 등

##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 차 별				비고
		계	2019	2020	2021	
합 계	⟨13,398⟩ 1,000,000	⟨13,398⟩ 1,000,000	26,348	884,652	89,000	
○ H/W 사업비	⟨13,398⟩ 728,178	⟨13,398⟩ 728,178		⟨13,398⟩ 728,178		
– 기초생활기반확충	507,606	507,606		507,606		
· 한뼘문화회관 조성	430,000	430,000		430,000		
· 작업쉼터 조성	77,606	77,606		77,606		
– 지역경관개선	⟨13,398⟩ 220,572	⟨13,398⟩ 220,572		⟨13,398⟩ 220,572		
· 한뼘초록길 조성	⟨13,398⟩ 151,324	⟨13,398⟩ 151,324		⟨13,398⟩ 151,324		
· 더불어 한뼘마당 조성	69,248	69,248		69,248		
○ 지역역량강화	140,000	140,000		51,000	89,000	
○ 부대비용 등	131,822	131,822	26,348	105,474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9. 01. ~ 2021. 12. (3년)

9. 사업효과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20-53호

##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장수남송로(중로3-5호, 소로2-14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장수군계획시설(도로/장수남송로(중로3-5호, 소로2-14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장 수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수 남송로(중로3-5호/소로2-14호) :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규모	비고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장수 남송로 개설사업 (중로3-5호, 소로2-14호)	도로개설 $L=670m, B=8\sim10m$	

###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불 임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350-2578)

[붙임]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장수 남송로 개설사업(중로3-5, 소로2-14호)-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계	30필지			88,031	6,071				
1	장수읍 두산리	479-4	도로	1,745	42	국(국토 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장수읍 두산리	479-19 (479-15)	답	97	93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	장수읍 두산리	480-0	대	165	122	장수군	"		
4	장수읍 두산리	483-5	도로	259	85	장수군	"		
5	장수읍 두산리	483-9	장	55	55	김점이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백장로 2161		
6	장수읍 두산리	483-10	답	1	1	김점이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백장로 2161		
7	장수읍 두산리	483-12	답	497	497	김점이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백장로 2161		
8	장수읍 두산리	484-20	도로	268	2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9	장수읍 두산리	484-26 (484-2)	답	72	72	장수군	"		
10	장수읍 두산리	484-27	대	68	68	장수군	"		
11	장수읍 두산리	484-28 (484-4)	답	147	147	장수군	"		
12	장수읍 두산리	496-1	도로	1,466	267	국(국토 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	장수읍 두산리	496-8	도로	194	1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4	장수읍 두산리	497-4	도로	200	51	장수군	"		
15	장수읍 두산리	500-2 (500-0)	답	3	3	장수군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6	장수읍 두산리	501-1 (501-0)	답	612	611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17	장수읍 두산리	502-3 (502-0)	답	671	671	장수군	"		
18	장수읍 두산리	503-1 (503-0)	답	144	144	장수군	"		
19	장수읍 두산리	504-2	답	7	7	장수군	"		
20	장수읍 두산리	505-3	도로	8,268	1287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1	장수읍 두산리	508-1	도로	6,598	42	국(건설교통부)	"		
22	장수읍 두산리	701-0	하천	46,817	152	국 (건설부)	"		
23	장수읍 두산리	728-26	하천	183	36	국(국토교통부)	"		
24	장수읍 두산리	728-27	하천	83	57	국(국토교통부)	"		
25	장수읍 두산리	728-28	하천	556	275	국(국토교통부)	"		
26	장수읍 두산리	728-40	하천	16,801	999	국(국토교통부)	"		
27	장수읍 두산리	728-81	하천	332	36	국(국토교통부)	"		
28	장수읍 두산리	728-82	하천	5	4	국(국토교통부)	"		
29	장수읍 두산리	748-0	도로	928	68	국(국토교통부)	"		
30	장수읍 두산리	749-1	도로	789	176	국(국토교통부)	"		

##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결과

### 1. 인가신청의 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송로(중로3-5, 소로2-14호)개설공사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장수 군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남송로(중로3-5, 소로2-14호)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남송로(중로3-5, 소로2-14호)개설공사

– 규 모 : L=670m, B=8~10m

– 면 적 : 6,071m<sup>2</sup>

####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0

### 2. 공고방법 : 군보게재 (장수군보 제414호(2019.04.18.))

### 3. 열람기간 : 2019. 04. 16 ~ 2019. 04. 30.(14일 이상)

### 4. 관계기관(부서)협의 내용 : 농업정책과, 안전재난과

#### 가. 장수군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협의

○ 전라북도 고시-31호(1993. 2. 15.)호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용  
도구역 지정 시 농지전용 협의가 기 이뤄진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협의)대상이 아님.

나. 장수군 안전재난과 소하천점용허가 협의

○ 두산소하천 점용허가( $1,632m^2$ ) : 2020. 3. 27

○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5.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6. 의견제출 : 없음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을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